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4-105관련
----------	----------

발의년월일 : 2024. 8. 30.

발의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현행 제정안의 감면 범위에 적절하지 않은 적용 조문을 수정하고,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구민들의 순환열차버스 이용을 제고하기 위함. 또한 민법상의 문구를 수정하여 조문 해석에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용료 감면 규정 수정 및 추가 (제5조)
- 나. 민법상 문구 수정 (제8조)
- 다.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제8조 중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를 “고의 또는 과실로”로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5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p> <p>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p> <p>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p> <p>4. 5. (생략)</p> <p><신설></p>	<p>제5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p> <p>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 ----- ----- ----- ----- ----- -----.</p> <p>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p> <p>4. 5. (현행과 같음)</p> <p>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p>

제8조(이용자의 변상 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 중 차량 및 버스 노선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 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제8조(이용자의 변상 책임) -----
 -- **고의 또는 과실로** -----

 -----.